

2024년 ESG 동향 중간 결산 및 하반기 전망 -지속가능성 규제와 기업지배구조-

July 18, 2024

I. 들어가며

2024년 상반기에는 국제 정치 환경이 친환경 및 ESG 관련 정책의 후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2024년 중반 현재 ESG 관련 규제는 오히려 고도화, 구체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EU에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던 ESG 관련 규제들이 마무리되면서 이를 구체화하는 세부 지침들이 조만간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올해 11월 대선에서 공화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유럽의회 선거에서 강경 우파가 약진함에 따라 향후 친환경 및 ESG 관련 정책도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ESG 투자는 2024년 초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2024년 상반기부터 주주행동주의가 강화되면서 주주총회에서 ESG 지표의 활용이 확인되고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논란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밸류업 정책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2024년 상반기에 대두된 ESG 이슈들을 정리하면서 2024년 하반기 이후의 ESG 동향을 전망하고 국내 기업이 ESG와 관련하여 대비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 [주요 글로벌 ESG 규제 동향과 2024년 전망 \(shinkim.com\)](https://shinkim.com))

II. 주요 국내외 지속가능성 정책 및 규제 동향

1. 글로벌 지속가능성 정책 동향

미국: 트럼프 공화당 정권 복귀에 따른 친환경 정책 후퇴 가능성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집권하게 되면 미국 내 환경 관련 정책 및 규제도 상당 부분 변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 공화당 행정부 출신을 포함한 보수 인사들은 공화당 집권에 대비해 마련한 정책 청사진 “프로젝트 2025”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크레딧 제거, 미국 환경보호국(EPA) 규모 축소, 화석연료 산업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책은 일반적으로 미국 내 환경 규제의 완화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공급망 정책과 맞물려 인권 및 반부패와 관련된 공급망 실사 등 통상정책은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합니다. 다만 프로젝트 2025에서는 이러한 정책은 특정 후보나 캠페인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트럼프 후보 또한 프로젝트 2025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EU: 그린래시로 인한 EU정치 지형 변화와 환경 정책 변화 가능성

지난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강경우파 정당으로 분류되는 ECR (European Conservatives and Reformists)과 ID(Identity and Democracy Party)가 각각 제3당, 제5당의 지위를 차지했고 기존 제4당이던 녹색당의 의석이 54석(기존 69석)으로 줄어들어 제6당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지형의 변화를 초래한 원인 중의 하나로 ‘그린래시(greenlash, 녹색정책에 대한 반발)’가 지목되고 있고 이에 따라 향후 EU의 친환경 정책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입법화된 지속가능성 공시 및 실사 지침 등이 예정대로 이행될 것인지, 과거와 같이 ESG 정책을 강화하는 제안이 계속 나올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ESG 공시제도 동향

[EU CSRD]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가 발효됨에 따라 CSRD 적용 대상 기업들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ESG 공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업 부문별 공시기준 발표가 2026년 6월 30일로 연기됨에 따라 2025년 첫 공시에는 산업과 무관하게 적용되는(cross-sector) 공시 표준에 따른 공시만 이행하면 됩니다. 한편 EU 역외 기업에 적용되는 공시기준 발표 또한 2026년 6월 30일로 연기되었으나 이는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공시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2024년 1월에는 공익 및 상장 중소기업(Listed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LSME)을 위한 ESRS와 비상장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자발적 보고기준(Voluntary Standard for non-listed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VSME) 초안이 발표되었고, 공익 및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공시 지침은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은 공시 의무는 없으나 공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보고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ESG 공시에 있어 가장 어려운 항목인 중대성 평가에 관한 이행 지침([EFRAG, ESRS 보고 이행을 위한 실무지침 발간 - 「중대성 평가 이행 가이드선스」의 주요 내용- \(shinkim.com\)](#) 참고), 밸류체인에 관한 이행 지침 및 검토해야 할 데이터 포인트를 정리한 문서가 작년 12월에 초안이 공개된 후 올해 5월 최종본이 발표되었습니다. 초안 대비 변경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 ESG 공시 이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중대성 평가 이행지침	밸류체인 이행지침	데이터포인트
· 경영진 및 감독기구의 역할 추가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강조 · TNFD (The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등 타 ESG 공시 가이드라인과의 연계 확대	·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 범위에 따른 재무보고 기능과의 연계 강조 · ESG 공시의 범위(운영통제권)에 대한 설명 구체화 · 밸류체인 내 지속가능성 정책 공시 범위 구체화 · 경과규정 추가	· 의무 공시 항목 감소 (823개→783개) · 자발적 공시 항목 감소 (279개→269개)

[미국 SEC 기후공시 및 캘리포니아 기후공시 관련 입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최종안이 2024. 3. 6.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및 GHG Protocol(온실가스 회계 처리 및 보고 기준)에 기반한 기준으로, 기업들은 이 규정에 따라 기후 리스크와 관련된 재무적 영향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미국 증권시장 내 모든 상장기업이 적용 대상이며, 시가총액에 따라 2026년 공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올해 3월에 채택된 최종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Scope 3 배출량 공시 의무 면제, Scope 1&2 배출량이 중요한 정보인 경우 제한적 확신(Limited Assurance) 수준의 검증을 거친 배출량 공시, 기업 규모에 따른 공시 유예 기간 부여 등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현재 행정 유예 중이나, 신속한 심의 및 이행이 예상되므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최종안 통과\(2024. 3. 21.\)](#))

아울러, 2023년 10월 캘리포니아에서는 대기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요구하는 기후 관련 기업 데이터 투명성법 (Senate Bill 253)과 기후 관련 재무적 리스크 법(Senate Bill 261)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캘리포니아에 설립된 매출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은 2026년부터 Scope 1,2,3 탄소배출량을 공시하여야 하며, 매출액 500백만 달러 이상의 기업은 격년으로 기후 관련 재무리스크 및 이에 대한 완화 전략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ISSB 공시기준에 따른 주요국 공시기준 제정]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S1(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이하 “IFRS S1”),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S2(기후 관련 공시, 이하 “IFRS S2”)을 2023년 6월 발표한 이래로 영국, 호주,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에서는 ISSB 기준에 기반한 자국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발표하고 법제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Scope 3 배출량 공시 및 제3자 검증 의무화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기후 관련 공시기준을 우선 도입하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면서도 자국 상황에 맞는 공시기준을 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표2> 주요국 ESG 공시 법제화 현황

국가	영국	호주	싱가포르	중국	일본
현황	-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제정 및 정부 승인 예정 ('24년 7월 제정 및 '25년 1분기 승인 목표)	- 기후공시 의무화 법안 초안 발표 ('24년 1월)	- 기후공시 의무화 로드맵 확정 발표('24년 2월)	- 재무부, 기업 지속가능성 공개표준 초안 발표('24년 5월)	-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 발표('24년 3월, '25년 3월까지 확정된 공시기준 채택 목표)
주요 내용	- IFRS S1 및 S2 기반	- IFRS S2 기반 - Scope 3 배출량 보고 의무화 - 제3자 검증 의무화 예정 (Scope 1,2 배출량에 대한 '합리적 확신 (reasonable assurance)' 수준의 검증에서 시작하여 단계적 도입)	- IFRS S2 기반 - Scope 3 배출량 보고 의무화 - Scope 1&2 배출량에 대하여 제한적 확신 수준의 검증 필요	- IFRS 기준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동일하게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하여 거버넌스/전략/리스크 관리/지표 및 목표 프레임워크로 보고 - 이중 중대성 원칙 적용	- IFRS S1 및 S2 기반 - Scope 3 배출량 보고 의무화 - 제3자 검증 의무화 여부를 명시하지 않음
적용 대상	- 영국 상장 기업, 영국에 등록된 대규모 기업(large UK registered private companies) 및 유한책임조합 (LLP)	-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에 연례재무보고서를 제출하는 대기업* * 상장/비상장기업, 금융기관, 자산소유자(퇴직연금 기관 등), NGER Act(호주 국가온실가스 및 에너지보고법)에 따른 보고 의무가 적용되는 법인	- 싱가포르 상장 기업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기업 * FY2027년 기준 연간 매출 10억 싱가포르달러 이상, 총 자산 5억 싱가포르달러 이상	- 추후 적용 가이드 발표 예정	- 미정: 프라임상장기업*부터 적용 검토 * 도쿄증권거래소 최상위 시장(대기업)에 해당
적용 시기	- 미정: '25년 2분기 내로 발표 예정	- 기업 규모(자산, 직원 수)에 따라 2024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기업 규모(자산, 매출)에 따라 2026년 공시(FY2025)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재무부 초안의 경우, 2026년 공시(FY2025)부터 적용하고, 경과조치 시행	- 의무화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기업 규모(시가총액)에 따라 2028년 공시(FY2027)부터 단계적 시행 방안 논의 중

[국내 ESG공시 의무화 방안]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원회에서는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되 구체적인 의무화 대상기업 및 도입 시기 등은 추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회계기준원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2024년 4월 30일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하였고 최종안은 2024년 8월 31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법제화 전에 이와 같이 미리 공시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정책 당국의 공시 의무화 의지를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한국회계기준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2024. 5. 3.\)](#))

3. EU發 공급망 실사 규제의 다양화 및 시행

올해는 EU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사업 전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 입법화된 규정들은 공급망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요구하고 제품 제조 과정에서의 외부 영향을 식별하고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각 규정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 CBAM의 신고 및 등록 의무 적용] 2023년 5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발효되었으며, 2023년 10월부터 2026년까지의 전환기간 동안에는 기업들은 분기 보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2026년 1월부터는 확정기간이 시작되어, CBAM 신고서 제출, 현장검증, 검증 보고서 및 CBAM 인증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특히, 2024년 12월 31일부터는 제5조, 제10조,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7조에 따른 CBAM 신고 및 등록 의무가 적용되므로, 2024년 하반기부터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EU의 新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야: 탄소국경조정\(CBAM\) 및 외국보조금\(Foreign Subsidy\) 관련 규정 검토 \(shinkim.com\)](#))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 UK CBAM 입법 논의] 영국 정부는 2027년부터 영국 CBAM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수입 상품의 온실가스 배출 정도와 원산지 국가 및 영국의 탄소 가격 차이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재에 적용되며, 2024년 내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및 적용 범위에 대한 협의(Consultation) 과정을 거쳐 CBAM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협의는 2024년 3월 21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향후 발표될 최종안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 CBAM은 영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UK ETS)와도 상호작용하며 추진될 예정입니다.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 EU Forced Labor Regulation 유럽의회 통과] EU에서 강제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상품의 판매, 수입 및 수출을 금지하는 강제노동 금지 규정이 2024년 4월 유럽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회원국 당국이나 EU 집행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각 회원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으며, EU 집행위는 역외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의심될 경우 직권으로 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강제노동과의 결부가 입증되면 회원국 세관 당국은 해당 수입품을 압수하고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강제노동 관련 국제 보고서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이번 규정은 EU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며, 발효 3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 - 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입법] 기업의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인 CSDDD가 2024년 4월 유럽의회를 통과하여 5월 EU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7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2028년부터는 1000명 이상의 임직원과 전 세계 순 매출 4억 5천만 유로 이상의 기업에 대해 적용됩니다. 또한 기업들은 파리 협약의 2050 탄소중립 계획과 유럽 기후법에 명시된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 기업과 실사 대상기업 모두 공급망 실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참고: [EU 상주대표회의의 공급망 실사지침\(CSDDD\) 최종 승인: 적용대상 축소,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 적용 등 \(shinkim.com\)](https://shinkim.com))

[EU 에코디자인 규정 - ESPR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 Regulation) 의회 통과] 유럽의회는 2024년 4월 23일 기존의 ‘에코디자인 지침’(Ecodesign Directive)을 개정하는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 Regulation)을 의결하였습니다. 에코디자인 규정은 주로 에너지 효율성의 측면을 강조하였던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과는 달리, 제품의 내구성이나 재활용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여러 다양한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향후 EU 이사회의 공식 승인 절차와 관보 게재, 실행계획(Working plan)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EU 에코디자인 규정 유럽의회 통과 - 에코디자인 요구조건 강화 \(shinkim.com\)](https://shinkim.com))

[EU 삼림전용(轉用) 방지 규정 - EUDR(EU Deforestation Regulation) 공급망 실사 의무 적용] EUDR에 의한 공급망 실사 의무 역시 2024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UDR은 삼림 파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EU 역내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삼림 파괴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 및 생물다양성 손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EU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수출하는 기업들은 실사(due diligence)를 통하여 EUDR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참고: [EUDR \(European Uni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Regulation, EU 삼림전용 방지 규정\): 기업이 알아야 할 필수 사항 \(shinkim.com\)](https://shinkim.com))

III. ESG 투자 동향 및 그린워싱 규제

1. ESG 투자 동향 -

모닝스타의 글로벌 지속가능 펀드 흐름 리뷰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글로벌 지속가능 펀드(global sustainable funds)는 9억 달러가 순 유입 되어 23년 4분기의 8,800만 달러 순 유출 대비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유럽에서는 109억 달러 순 유입, 미국에서는 88억 달러 순 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존에 ESG 펀드 공시와 그린워싱 규제에 따라 ESG 펀드로 분류되는 펀드 자체가 감소하였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ESG 펀드 공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U의 ESG 펀드가 유입세로 돌아선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 3> 2024 1분기 모닝스타 지속가능 펀드 통계

	유입/유출	자산		펀드	
	USD Billion	USD Billion	% Total	#	% Total
유럽	10.9	2,513	84	5,581	73
미국	-8.8	335	11	630	8
아시아 (일본 제외)	0.2	63	2	606	8
호주	0.0	30	1	261	3
일본	-1.7	25	1	233	3
캐나다	0.2	34	1	332	4
합계	0.9	2,999		7,643	

2. ESG 펀드 관련 공시 규제

[EU] 유럽증권시장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이하 “ESMA”)은 지난 2024년 5월 14일, ESG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는 펀드명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ESMA 가이드라인”) 최종 보고서(Final Report -Guidelines on funds’ names using ESG or sustainability-related terms)를 발간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펀드명에 ESG 또는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펀드의 ESG 또는 지속가능성 관련 투자 비율을 8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ESMA 가이드라인은 ESMA 웹사이트에 모든 EU 공식 언어 번역본이 게시된 날 기준 3개월 후부터 신규 펀드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 ESMA, ESG 펀드명 가이드라인에 대한 최종 보고서 발간 \(shinkim.com\)](https://shinkim.com))

[영국] FCA(금융감독청)는 2023년 12월, SDR(지속가능성 공시요구사항) 및 투자 라벨링에 관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으며, 이를 2024년 5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규칙은 그린워싱 방지, 투자 상품의 네이밍 및 마케팅, 금융상품 관련 발행공시와 유통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2025년부터 프랑스는 사회책임 투자 펀드인 ISR 라벨(프랑스어로 ISR; Investissement Socialement Responsable)이 붙은 펀드는 화석연료 투자를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ISR 라벨이 붙은 펀드는 약 1200개로, 이중 45%는 석유 및 가스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70억유로(약 10조571억원)에 이르러, 유럽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금융감독원은 2023년 10월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향후 펀드 명칭에 ESG를 포함하고 있거나, 투자설명서상 투자목적·전략 등에 ESG를 고려하고 있음을 표시·기재하는 펀드는 앞으로 증권신고서에 투자목적·전략, 운용능력, 투자위험 등 중요정보와 ESG 연관성을 사전 공시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용경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국내 ESG 펀드 공시기준은 유럽 및 미국과 같은 내용과 명칭의 정합성에 관한 규제는 아니지만, 향후 그린워싱 규제 강화 동향에 따라 위와 같은 유럽의 사례와 유사한 규제가 도입되고 이에 따라 관련 분쟁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금융감독원,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 도입\(2023. 10. 24.\)](#))

3. 그린워싱 규제의 강화

[EU 녹색전환을 위한 소비자 역량강화 지침 - ECGT] 2024년 1월 17일 유럽 의회에서 녹색전환을 위한 소비자 역량강화 지침(directive to empower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이하 “ECGT”)이 통과되어 3월부터 발효되었습니다. ECGT는 기업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친환경 선택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입증되지 않은 친환경 표기 사용, 탄소 상쇄(Carbon Offset,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에 의존한 친환경 표기, 제품 내구성의 과대 홍보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CGT는 2026년 3월 27일까지 EU 회원국이 이를 입법화하고 2026년 9월 27일까지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U 그린 클레임 지침] 2024년 3월 12일 유럽 의회에서 그린워싱 관련 지침인 GCD (Green Claim Directive)가 first reading에 채택되었으며, 6월 17일에는 general approach로 채택되었습니다. GCD는 기업이 친환경성을 표시 또는 홍보하는 경우 친환경성에 관한 입증은 해야 하며, 입증은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 조달 배제, 벌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하는 규제로서,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 수단입니다. 그리고 입증은 제3자 혹은 독립된 검증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 그린 클레임 지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그린워싱 방지 가이드인 Green Guides는 2012년 업데이트 이후 12년이 경과한 올해에 다시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 관련 라벨링, 재활용 표기 방법, 탄소 상쇄 관련 사항, 용어(“Organic”, “Sustainable”, “Compostable”, “Degradable”, and “Ozone-friendly”)에 대한 가이드, 에너지 사용 및 효율성 관련 가이드에 대한 업데이트를 완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2023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였고, 10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이른바 “그린워싱”)예방을 위한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이하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환경부의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 적발 기업은 2019년 45개사에서 2022년 2,676개사로, 2023년 8월까지 1,388개사로 그 수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그린워싱에 관하여 한층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공정위, 그린워싱 방지 위한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 \(shinkim.com\)](#),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shinkim.com\)](#))

IV. 2024년 주목받는 기업지배구조와 ESG 이슈

1. 주주행동주의와 ESG

2024년 정기주주총회 시즌은 2023년에 이어 주주행동주의의 영향력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기업의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주주제안자가 지배구조 문제에 따른 기업가치 저평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주제안자가 제안한 후보자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려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는 정부 당국의 요청도 있었던 바, 향후에도 지배구조 개선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에 연계한 주주행동주의의 화두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 4> 2024.4.17.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 요청사항

대상	요청사항
행동주의 펀드	• 단기 수익 추구보다 기업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장기 성장전략 제시
상장사	•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 정당한 주주 요구에 적극 소통
시장 전문가	• 주주행동주의와 기업 대응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

이번 주주총회 시즌에서는 특히 ESG의 G(거버넌스, 기업지배구조) 지표가 경영권 분쟁에 실제로 적용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향후에도 ESG 지표를 경영권 및 기업 밸류업과 관련하여 어떻게 적용할 지가 ESG 경영 고도화의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주총회 시즌을 돌이켜 볼 때, 앞으로 다음과 같은 ESG 지표를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1주마다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로써, 소액주주는 그 의결권을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에게 집중하여 투표할 수 있으므로 그 후보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보다 가능해집니다. 상법에 따르면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3%(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1%)를 보유한 주주는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를 선임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집중투표제는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어, 대부분의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해 왔습니다. 한국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 및 ESG 평가지표들은 정관상 집중투표제 배제 여부를 확인하여 집중투표제 도입 기업의 ESG를 긍정적으로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1998년 집중투표제 도입 이래 도입률은 여전히 한자리 수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현황에 따르면, 집중투표제 도입율은 2023년 3.5%로 공시대상 기업의 타 지표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2013년, 2018년, 2020년에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화두가 된 적이 다수 있었으나 결국 무산되었고 앞으로 의무화가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다만 주주 친화적 경영을 위해서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도입하는 경우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이사 선임 관련 가이드라인과 절차를 강화하고, 소액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회사의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내/외 교육 및 지원방안 수립 등 관련 사항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이사의 선임 가이드라인과 이사회 역량 현황표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는 기업 경영 관련 각 영역별 전문성,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가치 침해를 저지하기 위한 책임성, 성별 등의 다양성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기업지배구조 헌장 및 가이드라인, 이사회추천위원회 규정과 기타 이사 선임 관련 정책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국내법에서는 자산 2조 이상 상장기업에 대하여 성별의 다양성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 역량 현황표(Board Skill Matrix)의 공시와 더불어 이사회의 다양성을 ESG 평가지표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의결권 행사 시 각 이사 후보자의 책임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의결권 경쟁 상황에서는 각 추천된 후보자가 선임될 경우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의 경우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사 후보자를 선정한다는 명문화된 정책 또는 절차나 이를 고려하여 이사 후보자를 선정한다는 확립된 관행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관투자자는 특히 의결권 경쟁 상황에서는 그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지할 후보자를 선택하므로 기업들은 주주 친화적이면서도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전문성과 다양성, 책임성을 고려하는 구체적 선임 정책을 구비하고 관련된 후보의 Pool 및 추천절차 등 관련 절차를 준비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사의 보수와 성과의 연계

이사회는 이사 및 임원의 보수 정책을 결정할 의무가 있으며, 자본시장법에서는 임원 개인별 연간 5억 원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 경우 그 임원, 보수총액 기준 상위 5인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각 임원의 성과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국내외 ESG 평가지표들은 최고 경영진의 보수 관련 공개와 그에 대한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지지 여부, 보수와 장기 성과의 연계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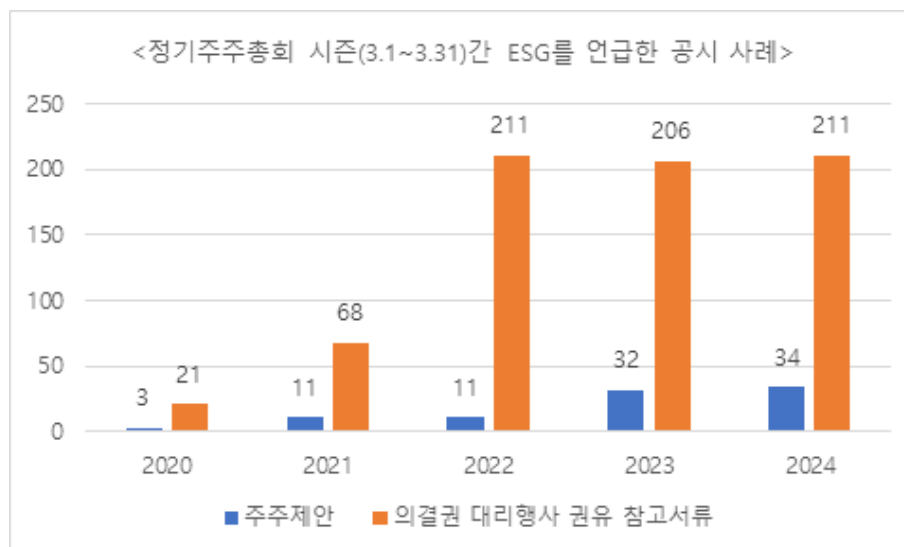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는 기업의 성과와 보수한도의 연계 여부를 살펴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성과와 보수가 연계되지 않는 경우 이를 지배구조 및 기업가치 제고에 부정적인 지표로 보아 주주행동의 근거로 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의 보수와 성과의 연계는 지배구조와 주주가치 연계의 직접적인 지표로 작용하므로 기업들은 성과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 및 산정기준을 수립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의결권 확보에서의 ESG 활용

국제 의결권 자문 기관인 ISS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는 기존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중요한 기업이 최근 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통합된 기존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프레임워크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업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반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ESG 관련 주주제안 역시 재무적으로 회사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거나 주주가치보다 특정한 목적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반대할 것이 권고됩니다. (참고: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의 국내기업 대상 가이드라인 개정 \(shinkim.com\)](https://shinkim.com))

최근 우리나라의 주주제안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있어서도 ESG가 언급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주행동주의 및 주주제안에 있어서는 대부분 기업지배구조 문제와 그에 대한 개선을 중시하고 있으며,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도 ESG 경영이 언급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있어서 ESG가 언급되는 사례는 대부분 당해 사업연도 영업상황 개요에서 각 기업의 ESG 활동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 및 투자자는 주주제안 및 의결권 경쟁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ESG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 주요 제품 대상 LCA(Life Cycle Assessment, 전과정평가) 평가 체계 구축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발행
- ▶ ESG지표관리 시스템 구축
- ▶ 재생에너지 확대 및 해외공장 감축 기술 전파, 재활용률 증대
- ▶ 공급망 ESG 관리를 위한 원재료 생산 프로세스 평가, 실사, 개선활동
- ▶ 친환경성 재료 사용 추진 및 파트너사 환경분야 지원
- ▶ 친환경 잉크 적용, FSC 인증 패키지 사용

3. 밸류업과 ESG

최근 자본시장에서는 밸류업이 화두가 되고 있으며, 증시 부양의 기대감과 함께 기업가치 개선계획 수립이라는 부담감이 동시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밸류업을 위해서는 PBR, ROE와 지배구조, 주주환원과 같은 지표를 활용하여 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업가치 제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소통할 것이 요구됩니다. 경영진과 이사회는 이러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밸류업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고 이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새로운 지속가능성 규제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들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혁신으로서 이사회 및 투자자와 공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IFRS(국제회계기준) 재단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및 국내 회계기준원이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은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재무적 위험과 기회를 분석하고 공시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정성적으로 공시되고 평가되어 왔기 때문에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기업들은 이러한 공시 기준에 따라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와 궤를 같이하여 비재무지표가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향후 지속가능성 공시 및 기업 밸류업 공시가 활성화될 경우, 기업의 ESG 경영과 재무적 성과와의 연계에 대한 공시제도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ESG 경영 목표 및 그에 따른 투자금액/비용이 과도한 데에 비하여 그 성과 및 목표 이행이 저조할 경우, 주주 친화적 경영과 ESG 경영이 양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 친화적 ESG 경영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라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4. ESG와 내부통제, ESG 거버넌스

ESG 공시기준의 공통점은 ESG 이슈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이행의 모니터링에 관한 이사회(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 또는 이사 개개인)의 역할과 ESG 이슈의 관리 감독에 관한 경영진의 역할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은 경영진 및 이사들이 ESG 이슈에 대해 적절하게 내부통제를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테두리 내에서 자사의 경영환경에 적합한 ESG 이슈를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록 내부통제 체계를 설계하고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상 이사회 및 경영진의 ESG 내부통제에 관한 역할>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 개인, 위원회)	· 전략, 주요 거래에 대한 의사결정, 위험관리 프로세스 및 관련 정책을 감독할 때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고려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목표의 설정을 감독 · 목표를 향한 진척도를 모니터링
경영진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감독

특히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임원, 대표이사, 이사회의 각 내부통제 관리, 총괄, 정책 수립과 감독의 의무를 부여하여 내부통제에서의 임원 및 이사의 역할에 대한 법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안전보건 이슈와 금융회사에 관하여 법률상 내부통제 의무를 정하고 있지만, 최근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등)는 사내이사는 물론 사외이사에 대하여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감시 의무를 인정하고 있어, 선제적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수립하여 내부통제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내부통제 체계 수립 방안(예시)>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대내외 ESG 환경 진단	내부통제 진단	책무구조도 마련/개선	책임영역별 내부통제 관리방안 마련/개선	내부통제(안) 이사회 의결	임직원 교육 및 점검, 이행

V. 결론

글로벌 ESG 규제가 확립되어 감에 따라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의 위험이 곧 재무적 위험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여러 기업의 사례를 통해 체감할 수 있습니다. ESG 전망을 분석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기업경영에서 중요해지고 있으며 ESG 위험은 더 이상 관련 부서만의 관리사항이 아닌 경영진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은 글로벌 ESG 규제의 원년으로, ESG 관련 규제의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논의가 마무리되고 이에 따라 해외 대기업들이 ESG 규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가치사슬에서 환경 및 인권은 기업 경쟁력, 거래처 협상력의 중요 요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과 개선 필요성 역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바, 기업은 관련 규제와 가이드라인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 ESG 센터는 다양한 부서가 맞닥뜨리는 ESG 관련 사항에 종합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기존의 ESG 경영 자문을 포함한 다양하고 새로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레터와 관련한 문의사항 및 ESG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련 전문가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 이창원 변호사 | T. 02-316-4623 | E. cwrhee@shinkim.com |
| • 송수영 변호사 | T. 02-316-1636 | E. sysong@shinkim.com |
| • 박효민 변호사 | T. 02-316-4252 | E. hmipark@shinkim.com |
| • 장윤제 전문위원 | T. 02-316-2895 | E. yjjang@shinkim.com |
| • 이현승 선임컨설턴트 | T. 02-316-4560 | E. hselee@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
